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비상설화〉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4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비상설화

개정안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소방청장</u>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 -----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위원회가 미구성되거나 회의가 미개최됨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¹⁾.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²⁾, 동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³⁾을 확정하고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⁴⁾.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 2022. 7. 5., 1면.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 2022. 7. 5.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39%) 폐지·통합」, 2022. 9. 7.

4) 현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되었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2.17. 시행)]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8.16.>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비 대상 위원회의 현황에 따라 ① 장기간 미구성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② 법령상·기능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③ 소속 변경을 통해 운영 내실화가 가능한 위원회는 그 소속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정비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3대 기준을 마련하였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정비 기준 중 운영실적 관련 기준을 2022년도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미만 개최된 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회 미만 개최된 위원회도 비상설회의체로 정비하도록 하여, 위원회 정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변경하였음.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2024년도 12월 말 현재 행정기관위원회의 숫자는 572개로, 2022년 7월 당시(636개 위원회)에 비해 64개 위원회가 정비되었음.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8.16.>

<위원회 정비 기준>

	정비 대상	정비안
폐지	①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③공무원들로만 구성 or 민간위원 참여 저조 위원회 ④설치목적 기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위원회 ⑤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⑥비상설 구성·운영이 가능한 위원회	폐 지 ※ 필요시 비상설 회의체, 공무원협의체로 운영하거나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통합	⑦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위원회 간 통합
소속 하향	⑧소속 변경을 통한 운영내실화가 가능한 위원회	총리→행안부

<상세 정비 기준>

구 분	정비 기준
2022년	- 최근 1년('21) 회의 미개최 - 최근 3년('19~'21) 연평균 1회 미만
2023년	- 최근 1년('22) 회의 미개최 - 최근 3년('20~'22) 연평균 2회 미만

(자료:행정안전부)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추이>

구분	22.7월 현재(A)	24.12월 현재(B)	A-B
계	636	572	64
행정위원회	42	39	3
자문위원회	594	533	61

(자료:행정안전부)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에서 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② 중·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③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④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⑤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⑥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⑦ 대학·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⁵⁾.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임.

개정안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소방산업 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목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구성) 기준 20명 이내 / 현재 15명으로 구성(영 제10조제3항)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현행 위원

- 임기 : 2023. 12. 21. ~ 2025. 12. 20.

- 성별·직능별 현황

구분	총계	공무원	유관단체	엔지니어	교수	기업인
소계	15	2	3	4	3	3
여성	6	-	-	4	2	-
남성	9	2	3	-	1	3

○ (운영)

-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간사 1명(소방청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
- 위원수당: 위원회 참석 시 회의수당 지급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당지급액	2,700	2,100	2,200	2,700

(자료: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회의는 출석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2회, 2회, 1회, 2회 개최되어 연 평균 개최 건수가 1.75회에 불과한 상황임.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회)

구 분	소 계	회의형태	
		출석	서면
2021년	2	-	2
2022년	2	-	2
2023년	1	1	-
2024년	2	1	1
평균 개최현황	1.75	0.5	1.25

(자료: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연 평균 개최 건수가 2회 미만이라는 점, 동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 회의의 50%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더라도 동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 건수가 적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완료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둘째, 현재 구성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재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025년 12월 20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작용의 신뢰 보호와 예측성 보장을 위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소방청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현재와 같이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보다 개정안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